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수정안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7조(청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 <p>제7조(의견진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 <p>제7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